

# 변경대비표(일반및자펀드)

##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종류 형변경	모펀드 운용역	환매 대금지급 일	개 인 연 금 클 래 스	퇴 직 연 금 클 래 스	명 칭 변 경	투자 대상 자산	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투자 대상 자산 한도	결 산	변 동 성	기 타
1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 (주식)	-	-	주 1)	-	-	-	-	주 2)	-	-	-	-
2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 식)	-	-	주 1)	-	-	-	-	-	-	-	-	-
3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 100 인덱스증권자 투자신탁(주식)(UH)	○	-	주 2)	○	○	○	-	주 1)	-	-	-	-
4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 100 인덱스증권자 투자신탁(주식)(H)	○	-	주 2)	○	○	○	-	-	-	-	-	15 )
5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	주 2)	○	○	-	-	-	-	-	-	-
6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	-	주 2)	○	○	-	-	-	-	-	-	-
7	미래에셋미국인덱스 EMP 증권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	-	주 2)	-	-	-	-	주 3)	-	-	-	-
8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 ESG 인덱스증권투자 신탁(주식-파생형)(H)	-	-	주 2)	○	○	-	-	-	○	-	-	-
9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 ESG 인덱스증권투자 신탁(주식)(UH)	-	-	주 2)	○	○	-	-	-	-	-	-	-
10	미래에셋 MSCIAC 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 식-파생형)(H)	-	-	주 2)	-	○	-	-	-	○	-	-	-
11	미래에셋 MSCIAC 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 식)(UH)	-	-	주 2)	-	-	-	-	-	-	-	-	-
12	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재간접형)	-	-	주 2)	-	-	-	-	-	-	-	-	-
1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 40 증권자 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주 2)	-	-	-	-	주 2), 주 3)	-	-	-	-
14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 40 증권자투자 신탁(채권혼합)	-	-	주 2)	-	-	-	-	주 2), 주 3)	-	-	-	-
15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재간접형)	-	-	주 2)	-	-	-	-	주 2), 주 3)	-	-	-	-
16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파생형)	-	-	주 3)	-	-	-	-	-	-	-	-	-
17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투자신탁 2 호(주 식)	-	-	주 4)	-	-	-	-	-	-	-	-	-

no.	펀드명	종류형 변경	모펀드 운용역	환매대금 지급일	개인연금 클래스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 변경	투자대상 자산	모펀드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자산 한도	결산	변동성	기타
18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주 4)	-	-	-	-	-	-	-	-	-
19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	-	-	-	-	-	-	-	-	○	○	14)
20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	-	-	-	-	-	-	-	-	○	○	-
21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	-	-	-	-	-	○	-
22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	-	-	-	-	○	-	-	○	○	14)
23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	-	-	-	-	-	-	-	-	-	-	○	-
2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	-	-	-	-	○	-	-	-	○	12), 13), 14)
25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 호	-	-	-	-	-	-	-	-	-	○	-	-
26	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	-	-	-	-	○	○	-
27	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	-	-	-	-	-	○	○	-
28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	-	-	-	-	○	○	-
29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	-	-	-	-	○	○	-
30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	-	-	-	-	-	-	-	○	○	-
31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	-	-	-	-	-	○	○	-
32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	-	-	-	-	-	○	○	-
33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	-	-	-	-	-	-	-	-

## 2. 변경 사항:

- 1) 종류형 변경(및 가입자격 변경)
-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3)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 4) 개인연금 클래스 신설
  - 5) 퇴직연금 클래스 신설
  - 6) 투자신탁 명칭 변경
  - 7) 투자대상자산 추가
  - 8)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 9)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 10)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11)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 1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 13) 법 개정사항 반영
  - 14) 이해관계인 삭제
  - 15)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23년 09월 13일(수)

4. 변경 내용:

- 1) 종류형 변경(및 가입자격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5. <신설>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좌동>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1]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 <생략> [아래 참조 1] ④제 1 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b>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b>
<b>제16조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b>	제 3 조 <b>제 3 항</b> 제 1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 3 조 <b>제 5 항</b> 제 1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b>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b>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다. <b>기준가격</b>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b>투자신탁</b>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b>수익증권</b>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b>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b>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b>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b>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b>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b>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b>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b>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b>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b>제35조 (수익자총회)</b>	<p>&lt;신설&gt;</p> <p>&lt;생략&gt;</p> <p>&lt;신설&gt;</p>	<p><b>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의 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b></p> <p>&lt;생략&gt;</p> <p><b>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b></p>
<b>제37조(보수)</b>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lt;신설&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b>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b>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b>[아래 참조 1]</b></p>
<b>제38조 (판매수수료)</b>	<b>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b>	<b>① 판매회사는 종류A,종류A-e,종류AG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b>

		<p>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5.0 이내  3. 종류AG 수익증권 : 1000분의 7.0 이내</p> <p>③ 종류A,종류A-e,종류AG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⑤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2.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p>
<p>제40조 (기타 운용비용 등)</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p> <p>② &lt;생략&gt;</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p> <p>② &lt;좌동&gt;</p>

	③<신설>	<p>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p>
--	-------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요약정보</p> <p>환매수수료</p> <p>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종류형 구조]</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p> <p>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신설>	[아래 참조 1]

[참조1]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종류 A	제한없음	0.66	1	-
종류 A-e	온라인 가입자	0.33	0.50	-

종류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0.46	0.70	-
종류 C	제한없음	1	-	-
종류 C-e	온라인 가입자	0.50	-	-
종류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0.69	-	-
종류 C-I	- 법제 9 조제 5 항제 1 호 내지 3 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0.03	-	-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 103 조에 따른 금전신탁 - 보험업법 제 108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	-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0.34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 이 내
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0.70	-	-
종류 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0.35	-	-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0.60	-	-
종류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0.30	-	-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투자설명서]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서윤석	(책임)서윤석, (부책임)김동환

3)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주1)

[집합투자계약]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7영업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8영업일</b>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6영업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7영업일</b>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6조 (환매연기)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5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6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4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5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나.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7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8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7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 2 부. 11. 나.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p>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5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6영업일전일</b>)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p> <p>&lt;생략&gt;</p>	<p>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4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5영업일전일</b>)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p> <p>&lt;생략&gt;</p>
--	--

주2)

[집합투자규약]

<p>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H)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재간접형)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p>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8영업일</b>(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9영업일</b>)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6영업일</b>(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7영업일</b>)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제26조 (환매연기)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6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7영업일전일</b>)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lt;생략&gt;</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4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5영업일전일</b>)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lt;생략&gt;</p>

[투자설명서]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H)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재간접형)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나.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8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9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7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 2 부. 11. 나.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6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7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4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5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생략>

주3)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

<b>제 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b>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6영업일</b>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6영업일</b>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5영업일</b>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6영업일</b>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b>제26조 (환매연기)</b>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4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4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3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4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b>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b>		
<b>항목</b>	<b>변경 전</b>	<b>변경 후</b>
<b>제 2 부. 11. 나.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b>	(가) 1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1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5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제 2 부. 11. 나.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b>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4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4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3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5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생략>

주4)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8영업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9영업일</b>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b>제5영업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6영업일</b>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6조 (환매연기)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6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7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3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제4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나.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8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9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5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b>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제 2 부. 11. 나.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b>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6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7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b>제3영업일전일</b>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b>제4영업일전일</b>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생략>
---------------------------------------	---	---

#### 4) 개인연금 클래스 신설

#####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 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신설>	[아래 참조 1]
제37조(보수)	<신설>	[아래 참조 1]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 1]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

[참조 1]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0.7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	0.3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퇴직연금 클래스 신설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 2]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신설>	[아래 참조 2]
제37조(보수)	<신설>	[아래 참조 2]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 2]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참조 2]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H)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H)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0.6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0.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0.6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0.29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H)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b>변액보험</b> 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 투자신탁(주식)(H)	미래에셋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 신탁(주식)(H)
-----------	---	----------------------------------

7) 투자대상자산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15 조(투자대상 자산 등)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b>3. &lt;신설&gt;</b>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b>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b>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b>3. &lt;신설&gt;</b>  4.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b>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b>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8. 가. 투자대상	[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생략> <b>&lt;신설&gt;</b>	[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 <생략> <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
	[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b>&lt;신설&gt;</b>	[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

8)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주1)

미래에셋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 대상	[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신설>	[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

주2)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 대상	[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신설>	[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

주3)

미래에셋미국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 대상	[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신설>	[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b>환매조건부매수</b>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생략> <b>※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b>

9)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통화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b>100%</b>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통화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b>40%</b>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8. 가. 투자 대상	위험평가액 기준 <b>100% 이하</b> <중략> -통화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위험평가액 기준 <b>40% 이하</b> <중략> -통화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b>100%를 초과</b> 하여 투자하는 행위 <생략>	가액의 <b>40%를 초과</b> 하여 투자하는 행위 <생략>
--	--	---------------------------------------

10)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투자비용>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u>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 무 및 운용실적 등 에 관한 사항	-	<u>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u>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 래내역	-	<u>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u>

11)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u>2</u>	<u>3</u>	<u>18.81</u>	<u>11.79</u>
미래에셋베스트펀드클렉션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u>2</u>	<u>3</u>	<u>20.68</u>	<u>14.89</u>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u>3</u>	<u>4</u>	<u>10.95</u>	<u>7.69</u>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u>3</u>	<u>4</u>	<u>13.36</u>	<u>8.73</u>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u>2</u>	<u>3</u>	<u>21.17</u>	<u>13.62</u>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u>2</u>	<u>3</u>	<u>18.78</u>	<u>11.63</u>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u>8.29</u>	<u>7.77</u>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u>21.4</u>	<u>19.68</u>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u>7.81</u>	<u>6.62</u>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u>7.42</u>	<u>7</u>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2	<u>20.21</u>	<u>16.57</u>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u>21.86</u>	<u>20.23</u>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	1	<u>31.93</u>	<u>28.14</u>

1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 투자상품)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3) 법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lt;생략&gt;</u>	-<생략> 나. <삭제>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u>정당한 사유없이</u>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14) 이해관계인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부. 1. 가. 회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 신탁업자 : 국민은행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삭제>

15)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부. 1. 가. 회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 일반사무관리회사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삭제>
제4부.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u>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u>	회사명: <u>한국펀드파트너스(주)</u>

\*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변경 내용은 동일함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서윤석 팀장

2) 주요 경력

(14년~16년) 미래에셋대우 기업분석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리서치부문

**2. 운용 현황(2023.08.31. 현재)**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2-04-01	787,016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1-08-22	54,268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3-08-16	5,379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1-06-15	21,711
미래에셋아시아하드웨어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2023-06-16	17,619

**3. 운용성과(2023.08.31. 현재,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6.78	-0.29	14.82	-1.48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6.31	-1.09	14.31	123.27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	-3.49	2.43	10.98	93.98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8.10	-3.55	10.09	0.35
미래에셋아시아하드웨어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2.59	-	-	0.54

## 1. 경력

1) 성명: 김동환 매니저

2) 주요 경력

(18년~19년) ABL글로벌자산운용

(19년~2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리서치부문

## 2. 운용 현황(2023.08.31. 현재)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2-08-06	32,540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3-08-16	5,379

## 3. 운용성과(2023.08.31. 현재,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18	1.67	11.45	65.91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	-3.49	2.43	10.98	93.98